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48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용혜인·김남근·김남희

박지혜 • 서왕진 • 송재봉

염태영 • 이수진 • 정춘생

정혜경・조 국・한창민

황명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·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,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,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,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.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 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(안 제151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5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(생 | 제15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<u>①</u> |
| 략) |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|
| |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|
| |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|
| | 출입할 수 있다. |